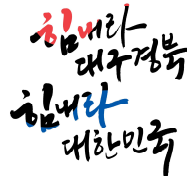
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0. 4. 6.(월)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	대중교통과	담 당 자	·과장 나기호, 사무관 윤주석, 주무관 이은정 ·☎ (044) 201-3823, 3826, 3830	
	택시산업팀	담 당 자	·팀장 오송천, 사무관 김동규, 한준수 주무관 ·☎ (044) 201-4770, 4757, 4771	
	대광위 광역버스과	담 당 자	·과장 박문수, 사무관 박선동, 주무관 안갑순 ·☎ (044) 201-5065, 5069, 5070	
보 도 일 시		2020년 4월 7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산방송인터넷은 4.7(화) 11:00 이후(국무회의 종료 후) 보도 가능		

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음주운전 관리 책임 강화

- '20.4.7(화)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-

- ☐ 올해 5월부터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여부 확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.
- ☐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음주운전 의무 위반 여객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'20.4.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.
- ☐ 개정된 여객법 시행령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현행보다 2배 강화된 처분(사업정지 30~90일 또는 과징금 → 60~180일 또는 과징금)을 받게 되며,
 - 음주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운수종사자의 운행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정지 기간이 현행보다 최대 3배(30~90일 또는 과징금 → 90~180일 또는 과징금) 늘어난다.
 - 또한, 운수종사자도 자신의 음주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5배가 늘어난 과태료(10→50만원) 처분을 받게 된다.

구분	현 행	개 정
운송사업자 처분기준	• 음주여부 사전 미 확인	
	- 사업일부 정지*(30~90일) 또는 과징금**(180~540만원)	- 사업일부 정지(60~180일) 또는 과징금(360~1,080만원)
	• 사전 확인후 운행 허용시	
	- 사업일부 정지(30~90일) 또는 과징금(180~540만원)	- 사업일부 정지(90~180일) 또는 과징금(540~1,620만원)
운수종사자 처분기준	• 운행전 음주사실 보고 위반	
	- 과태료 10만원	- 과태료 50만원

- * 사업일부정지 :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
- ** 사업정지 처분이 승객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,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·징수 가능

□ 한편, 이번 개정안에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 안전공단으로 '21년부터 이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.

-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-자격시험-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되어 자격취득 기간이 1~2일로 대폭 단축*될 수 있어, 응시자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택시 및 플랫폼 운송사업 기사 수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* (기존) 운전적성정밀검사(교통안전공단), 자격시험(지역별 택시조합), 범죄 경력 조회(택시조합→지자체 의뢰→경찰청 조회) 등 약 2주 소요

□ 그 외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(M버스)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*하였다.

- *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사업계획 변경 권한
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	관할 지자체
사업계획 변경 인가 총괄	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가 및 변경신고 수리 * 운행시간 변경, 영업소 변경, 정류소 변경, 운행경로(기·종점 제외) 변경, 운송부대 시설 변경

□ 음주운전 처분 관련 내용은 공포(관보게재) 후 1개월 이후 시행되고, M버스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 규정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, 택시운전자격시험 관련 내용은 '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.

○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에서 확인 가능하다.

□ 국토부 관계자는 “다중이 탑승하는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처벌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으며, 앞으로도 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.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윤주석 사무관(☎ 044-201-3826),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 김동규 사무관(☎ 044-201-4757),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 박선동 사무관(☎ 044-201-506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